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2. 8. 의회운영위원회  
나. 상정일자 : 2008. 12. 12.(제154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회의)

##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의회운영위원장)

### 가. 제안이유

원활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구성된 제천시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심의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제천시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월정수당 월 2,150천원을 월 1,750천원으로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학)

- 본 의안은 2008.12.0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첩 회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 및 제천시 회의규칙 제56조(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2008.12.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통보한 2009년도 1월1일부터 제천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적정하게 발의하였으며

○ 법률적인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1항제3호에 의거한 월정수당은 동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7에 따른 기준금액의 상한선 20% 범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등)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심의 결정 통보 받은 사항으로서 법률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 행정적인 검토사항

-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2008년 제천시의회의원에게 월 215 만원을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08.10.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천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한 매월 175만원으로 40만원을 인하 결정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위배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